기안자 서무과 신태식 문서번호 374

처리과 서무 도시계획 부시장

서무계장 15

제2계장 사계과장 시정과장

회계감사계장 회계과장 법제계장

64.12.14

서도서4324

64.12.17 12.17

각안참조

換地處分에 對한 新聞公告 (第2中央土地區劃整理地區中 鍾路地區및南大門地區一部)

第2中央土地區劃整理地區中 우선 종로지구 및 남대문지구 일부(陽洞, 桃洞, 2街, 東子洞, 南大門路5街)에 대하여는 지난 11. 27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404호로서 換地處分(換地確定處分)의 공고와 아울러 관계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바 있으나 주소不明等으로 返戾되어 오는것이 허다할 것으로 예상될뿐만아니라 本件換地處分의 重要性에 비추어 관계토지소유자는 勿論 일반 市民에게 널리 周知시켜야 할 事項으로 사료되옵기 다음과 같이 市中日刊新聞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게재 대상 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2. 년월일 1964. 12. 18

5-1

446

265

411

447.

3. 공고사항 別案공고문에 依함

4. 공고回數 1回

5. 공고料金 [illegible]萬八阡원整 18,000- 各社 6,000式 2社 50[illegible]

6. 지불방법 각불

7. 지출비목

(관) 제2종합토지개혁정리비 (항) 사무비 (목) 수수료 수선비

5-2

별안 1. (공고안)

公 告

서울특별시공고제 411 호

1. 서울특별시에서 實施한 第2中央土地區劃整理地區中 元曉路地區 및 南大門地區一部(陽洞. 桃洞1.2街. 東子洞. 南大門路5街) 區域內에 所在하는 土地에 對하여는 過去에 이미 換地豫定地를 指定한바 있으나 土地區劃整理事業年次에 따라 1964. 11. 27자 서울특별시公告第404號로써 換地處分(換地確定)하고 同換地確定에 對한 指定書 및 圖面을 서울특별시 都市計劃局 庶務課 및 管轄區廳建設課에 備置하여 關係人에게 縱覽에 供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換地處分에 對한 內容은 別途 個別的으로 土地所有者 들에게 通知한바 있읍니다 마는 住所 또는 居所 不明으로 返戾되어 오는 書類에 對하여는 土地改良事業法第124條 의 規定에依하여 이공고로서 送付에 代身함을 添記합니다

1964. 12. 17.

서울특별시장 尹致暎

별안 2 (新聞公告依賴)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신문공고 의뢰

1. 별지 공고사항 을 귀사 신문에 아래와 같이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연월일. 1964. 12. 18. 限

나. 게재회수, 1回에 限함

2. 공고료금은 신문에 게재후(공고) 청구에 의하여 지출하겠읍니다

유첨. 공고문(공고사항) 1통 끝.

수신처 한국일보사 사장
경향신문사 사장
서울신문사 사장

별안3. (市報揭載依頼)

수신. 공보실장 발신. 도시계획국장

제목. 공고사항 시보게재 의뢰

1. 서도서 432.4-22940 (64. 11. 27) 호에 관련된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공고제404 (1964. 11. 27) 호로서 공고한바있는 서울도시계획사업 제2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 중 원효로지구 및 난매근지구 일부지역 환지처분에 대하여 별지 공고사항을 시내 日刊 重要신문에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공고하였는바 동공고사항을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공고문사본 1통 끝.

참고 (關係法條)

1. 都市計劃法

第36條 (換地處分) 換地處分은 換地計劃區域의 全部에 對하여 工事가 完了된 後 遲滯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但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換地計劃區域의 全部에 對하여 工事가 完了되기 前에 換地處分을 할 수 있다.
事業執行者가 前2項의 規定에 依한 換地處分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遲滯없이 그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

2. 土地改良事業法

第124條 (公示 또는 公告)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한 境遇 其他 書類의 送達을 할 수 없는 境遇에는 行政廳 또는 組合이나 聯合會가 送付에 代身하여 公示 또는 公告할 때에는 그 公示 또는 公告가 있은 날에 書類를 送付한 것으로 하고 그 公示 또는 公告가 있은 날로부터 10日을 經過한 때에는 相對方에 到達한 것으로 본다.